

<p>시화나래초</p> <p>학교생활인권 규정</p>

1. 학교생활인권 규정	1
제 1장. 총칙	1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제 3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2
제 4장. 학생생활	3
제 5장. 학교 내 활동	5
제 6장. 학교 외 활동	7
제 7장.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	7
제 8장. 학생자치활동	9
제 1절. 학생자치회	9
제 2절.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10
제 9장. 생활지도의 범위	14
제 10장. 생활지도의 방법	15
제 10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21
제 11장. 개정방법	21
부칙	23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24
제 1장. 총칙	24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4
제 3장. 학생의 선도	26
제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29
제 5장. 규정의 개정	30
부칙	30

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 2023.06.01.
개정(1차) : 2023.11.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범위) 본 규정은 '시화나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학부모·교직원 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화나래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규칙기제사항, 시행령 31조와 경기도학생 인권조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구성)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하고, 위원

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인문안전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본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5조 (임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와 다음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① 문제행동이 아주 심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 ②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신고가 발생한 경우
 - ③ 학부모가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3회 이상)
 - ④ 교내 생활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보호자 진술기회를 제공한다.
5. 학교장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후 문제 학생에게 선도 사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선도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지도내용(선도 기간 중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내용, 학생과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6. 학생 선도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다.
7.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6조 (권리)

1.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안에서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 권을 보장받을 권리
2.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3.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복장 및 두발,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5.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6.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7.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8. 출신·성별·성적·외모·개인의 취향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보건·복지 혜택 등을 누릴 권리
10. 소수 정체성(장애·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듣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11.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5.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안전생활)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4.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과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5.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교통도우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지도해야 하고, 학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 상담해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사고
2. 학생(자녀)의 가출
3. 학생(자녀)의 집단 따돌림과 교우관계
4. 학생(자녀)의 폭력 피해
5.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제13조 (개인 물품의 관리)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인 물품을 소지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교직원 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 목적이나 학생의 안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진로지도)

1.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각종 검사도구의 활용,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지도를 충실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제15조 (용의복장)

1.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지 않고,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게 한다.

제7조 (책임)

1.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2.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
3.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
4.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5.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6.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7.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

제4장 학생생활

제8조 (기본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본인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습관화 한다.
3.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 (예절)

1.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2.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3.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4.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 (교우관계 및 이성교제)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내외에서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3. 학교는 학생들에게 생명존중과 책임성 있는 행동, 양성평등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

- 실외화는 규제하지 않고,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6조 (등·하교)

-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 (수업시간)

- 수업의 진행에 적극 참여한다.
-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주일 3회 이상 수업시간에 보건실로 갈 경우 보건교사의 의견에 따라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아픈 사실을 알리고 병원 진료를 권한다.

제18조 (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시간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자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는 행위
-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는 행위
- 학교폭력 행위
-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19조 (공공기물의 파손)

-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학급, 복도 환경계시물
 -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유리창·냉난방기·선풍기·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 제1호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환경 및 청소)

-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학교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1조 (봉사활동)

-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여가활동)

- 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학교는 여가 시간에 특별실(도서실, 강당 등)을 적극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적 건강과 취미,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은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들은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모든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휴식시간에는 다음 수업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제23조 (동아리활동)

-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동아리활동은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외활동 시간에(체육시간 등)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 계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일과 후 각 교실 및 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5조 (학교 외 활동)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활동 시간에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7.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7장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

제26조 (생활 인권 교육)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도모하여 3대 학생 문화 조성(존중, 배려, 나눔)에 힘쓰도록 한다.

제27조 (평등권 보장)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2.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28조 (사이버생활)

1.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음란물 유포,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다운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9조 (통신기기)

1.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등교 시 휴대폰 전원은 꺼둠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허락하여 사용한다. 이외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4.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5.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소지품)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타 도구는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31조 (사생활의 보호)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상담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

적인 목적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학교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지원 사실, 방과 후 수강료나 급식비의 미납 사실 등에 관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32조 (회원 및 권리) 학생회의 구성은 본교에 재학하는 3-6학년 학생으로 하며, 3학년은 학급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4-6학년 학급자치회 임원들은 학생자치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임원 선출)

1. 임원선거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생자치회 임원의 자격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회장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3. 학생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6학년 부회장 1인, 5학년 부회장 1인을 둔다.
4. 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둔다.

제34조 (직무)

1.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교 및 학급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맡아서 처리한다.

제35조 (부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봉사부 : 교내·외 원활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4.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5.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서부 : 도서실 이용 및 학급도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 (학생자치회의) 학생회를 대표하는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의를 둔다.

1. 구성 :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이웃돕기, 봉사활동, 건의사항 협의, 기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제안 및 협의
3. 회의 :
 - ① 학생자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4주에 소집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학생대표와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면담시간을 가질 수 있다.
 - ④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제37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자치회 임원선거(이하 ‘학생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9조 (대상)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대상은 새 학기 첫날부터의 원활한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는 이전 학년도 학년 말에 실시한다. 단, 개교년도인 2023학년도에는 1학기 말 자치회 임원선거를 진행한다.

1. 개교년도인 2023학년도에는 6학년에서 회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6학년과 5학년에서 각 1명씩 부회장 후보자를 선출하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투표한다.
2. 6학년 회장, 부회장 후보자는 5학년 중에서 선출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이 투표한다.
3. 5학년 부회장 후보자는 4학년 중에서 선출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이 투표한다.

제40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학년에서 각 반 1인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 입후보 자격은 2학기 전교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7.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8.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교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 ②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 ③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로 포스터 제작 물품 지급, 포스터 부착 및 관리 등

제41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제43조 (투표자명단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후보자) 학생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본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이어야 한다. 단, 개교년도인 2023학년도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5조 (후보자 등록)

1. 학생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지정된 날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② 담임 선생님 추천서 1부
 - ③ 학생 추천서 1부
2.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과 4, 5, 6학년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자로 한다. 단, 후보자 추천 시 중복 추천자에 대해서는 추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천자의 50% 이상은 반드시 다른 반 학생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후보자 검증)

1. 후보자들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에 자기의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 방안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2.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PPT로 제작하여 방송에 공개한다.

3. 후보자는 투표일 당일 오전 방송에서 자신의 공약과 소견을 발표한다.

제47조 (선거운동)

1. 지정된 장소와 시간 이외의 선거운동은 금한다.
2. 후보자들은 본인사진, 공약사항을 넣어 4절(세로) 크기로 선거포스터를 1부 제작하여 제출한다.
3. 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을 관찰하고 감시한다.
4. 위원회는 전체 위원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어긴 후보자에게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를 받은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②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③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편지, 친구, 부모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④ 기타 이 규정을 어긴 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주거나 벽에 부착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위원회는 위의 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경고를 받은 후보자에 대한 공고를 하여 투표자들에게 알린다.

제48조 (투 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2표(회장과 5학년 부회장)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종이 투표 방법으로 한다.
2. 선거권자가 있는 각 반에 종이투표 양식을 설치한다.
3. 각 반의 선거관리 위원의 입회하에 종이투표를 실시한다.
4. 각 반의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 직후 투표지를 개표장소로 보낸다.

제49조 (개 표)

1. 각 반의 선거관리 위원은 개표 장소로 투표지를 수합한다.
2. 개표는 위원회가 한다.
3. 후보자는 위원회가 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50조 (당선인 결정)

1.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하며 2위의 득표를 한 학생을 6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부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무투표 당선)
3.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동점)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

으로 재투표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정한다.

4.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재선거)

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①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2.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2조 (보궐선거)

1. 회장 및 6학년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50일 미만일 때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3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4조 (임원의 역할)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교내 캠페인 활동과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제55조 (학생자치회 운영회)

- 1. 학생자치회 운영회의 구성은 학교장, 교감, 교무, 담당교사,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 2. 학생자치회 운영회의 역할은 학생 임원선거, 전교학생회의 등 학교 학생회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한다.

제56조(학급자치회 임원선거)

- 1. 학급자치회 후보자는 그 학급에서 재학하고 있는 누구나 될 수 있다.
- 2.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의 시기는 학사 일정에 따른다.
- 3.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는 3~6학년에서 실시되며 회장 1인, 부회장 2인 (남녀 각 1명)을

선출한다.

4. 입후보자는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입후보할 수 있다. 2학기 학급임원 후보자는 1학기에 같은 직위의 임원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며, 다른 직위를 비롯해 동년에 임원 경험이 없는 학급 학생들이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5.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 당선자는 최다득표자가 된다.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6. 선출된 학급 임원의 유고 시에는 당시 차점자가 잔여기간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2개월 미만일 때는 공식으로 두고 남은 임원들이 역할을 대행한다.)

7. 선거위원 : 선거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입후보자가 아닌 학생이 선거위원이 되고 학급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8. 투표결과는 저장과 인쇄를 하고 학급에서 한 학기 동안 보관한다.

9.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한다.

제57조 (보칙)

1. 위원회는 투표표, 선거록 및 투표 확인지를 선거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운영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급)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거 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8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9조 (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0조 (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 (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제62조 (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④.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에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3조 (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9조에 따른 조언, 제60조에 따른 상담, 제 6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 6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②. 성찰하는 글쓰기
 -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64조 (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5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7조 (기타 사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62조제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탁 등)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3회 이상 조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순서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함)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가능하다는 교사 판단 아래 자기자리 복귀, 10분 내외)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내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호 지도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무실, 교장실 등 지정 장소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다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반복적인 미인정 지각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호 지도	가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제10장 62조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인계 후 가정학습 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되,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가 협의하여 분리 시간 및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					

제11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시행규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개정방법

제7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 (적용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4조 (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7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7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시화나래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147호, 2012.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조례 제4085호, 2010.10.5)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건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5학년 부장, 6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기타위원 등)
- ④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학교생활인권규정 담당 교사)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11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4조 (징계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①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사회봉사
 - ①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기관의 운영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며,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특별교육 이수

- ① 관련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②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④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출석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⑥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16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상담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 언행 등의 품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2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준법	4	상습, 고의적으로 무단지각을 한 학생	○	○			
	5	상습, 고의적으로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학생	○	○			

	6	고의적으로 학교 게시물을 훼손한 학생	○	○			
	7	껌, 휴지, 기타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	○	○			
	8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고의 훼손, 파손하는 학생	○	○	○	○	○
수업	9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	○	○	○
	10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1	수업거부를 선동한 학생	○	○	○	○	○
근태	12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자주하는 학생	○	○	○	○	
	13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	○	○	○	
	14	무단가출	○	○	○	○	
약물	15	흡연, 음주 등 위해약물을 복용, 흡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	○	○	○	○	
퇴폐, 위험 행위	17	불법서적, 영상물 소지, 탐독, 제작, 시청한 학생	○	○	○	○	
	18	성희롱, 비방(사이버 공간 포함)	○	○	○	○	○
	19	칼, 가위 등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으로 주변을 위협한 학생	○	○	○	○	○
금품	20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집단	2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그외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기타		- 재학 중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교칙을 위반하거나 교사의 지도를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이나 학급의 회장·부회장직을 해임할 수 있다. - 징계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모든 선도를 거친 뒤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의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모든 징계는 위의 징계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학생의 같은 문제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다발적으로 할 때는 위의 선도 기준의 양형보다 더 무거운 징계조치와 2개 이상의 선도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7조 (재심의 신청 및 운영 절차)

1.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결정 조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5. 재심의 신청 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이 경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6. 재심의가 끝난 후 학교장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결재한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완료된 후에는 재심의 결과를 이행한다.
7.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18조 (사안설명)

1. 생활규정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3.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규정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규정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0조 (선도 내용의 통지)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3조 (결과 처리·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규정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규정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4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